|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  **증치세 일반납세자 관리의 유관사항 조정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5년제18호  　 《국무원의 행정심사항목 등 일부 사항의 폐지 및 조정에 관한 결정》(국발 [2015] 11호) 정신에 따라서, 국가세무총국은 증치세 일반납세자 관리의 유관사항에 대한 조정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증치세 일반납세자 (이하 일반납세자라고 함)의 자격에 대하여 등기제를 실행하고, 등기사항은 증치세납세자(이하 납세자라고 함)가 주관세무기관에서 처리한다.  2. 납세자가 일반납세자 자격등기를 처리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납세자는 주관 세무기관에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등기표》를(첨부 1) 작성하여, 세무등기증과 함께 제출한다.  (2) 납세자의 기입내용과 세무등기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 주관 세무기관은 현장에서 등기한다.  (3) 납세자의 기입내용과 세무등기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또는 기입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세무기관은 현장에서 납세자에게 보충기입 해야 할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3. 납세자의 연간 과세 매출액이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규정표준 (이하 규정표준이라 함)을 초과하고, 유관 정책규정에 부합하여 소규모납세자의 납세를 선택하는 경우 주관 세무기관에 서면설명(첨부2)을 제출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이외의 기타개인이 연간 과세 매출액이 규정표준을 초과하는 경우 주관 세무기관에 서면설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4. 납세자의 연간 과세 매출액이 규정표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기한 종료 후 20 영업일 이내에 본 공고 제2조 혹은 제3조 규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처리한다; 규정 시한 내 처리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관 세무기관에서 규정기한 종료일 후 10 영업일 이내에《세무사항 통지서》를 제작해야 하며, 납세자에게 10일 영업일 이내에 주관 세무기관에서 관련 절차를 처리하도록 고지한다.  5.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납세자가 선택한 일반납세자 자격 유효일로부터, 증치세 일반 세금계산방법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를 수령해야 한다.  6. 본 공고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증치세 일반납세자의 자격인정 관리방법》 (국가세무총국령 제22호) 제4조 제2관 (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는 시행을 잠정 중단하고, 상응하는 조항은 규정절차에 의거하여 수정 후 다시 공표한다.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1. 치세 일반 납세자의 자격 등기표  2. 규모 납세자의 납세상황 설명에 따른 선택  국가세무총국  2015년3월30일 |  | **国家税务总局**  **关于调整增值税一般纳税人管理有关事项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5年第18号  　　按照《国务院关于取消和调整一批行政审批项目等事项的决定》（国发〔2015〕11号）精神，国家税务总局对增值税一般纳税人管理有关事项进行了调整，现公告如下：  　　一、增值税一般纳税人（以下简称一般纳税人）资格实行登记制，登记事项由增值税纳税人（以下简称纳税人）向其主管税务机关办理。  　　二、纳税人办理一般纳税人资格登记的程序如下：  　　（一）纳税人向主管税务机关填报《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登记表》（附件1），并提供税务登记证件；  　　（二）纳税人填报内容与税务登记信息一致的，主管税务机关当场登记；  　　（三）纳税人填报内容与税务登记信息不一致，或者不符合填列要求的，税务机关应当场告知纳税人需要补正的内容。  　　三、纳税人年应税销售额超过财政部、国家税务总局规定标准（以下简称规定标准），且符合有关政策规定，选择按小规模纳税人纳税的，应当向主管税务机关提交书面说明（附件2）。  　　个体工商户以外的其他个人年应税销售额超过规定标准的，不需要向主管税务机关提交书面说明。  　　四、纳税人年应税销售额超过规定标准的，在申报期结束后20个工作日内按照本公告第二条或第三条的规定办理相关手续；未按规定时限办理的，主管税务机关应当在规定期限结束后10个工作日内制作《税务事项通知书》，告知纳税人应当在10个工作日内向主管税务机关办理相关手续。  　　五、除财政部、国家税务总局另有规定外，纳税人自其选择的一般纳税人资格生效之日起，按照增值税一般计税方法计算应纳税额，并按照规定领用增值税专用发票。  　　六、本公告自2015年4月1日起施行。《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认定管理办法》（国家税务总局令第22号）第四条第二款第（一）项、第七条、第八条、第九条、第十一条暂停执行，相应条款将依照规定程序修订后，重新予以公布。  　　特此公告。    附件：1.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登记表  　　　2.选择按小规模纳税人纳税的情况说明  国家税务总局  2015年3月30日 |